

비밀

유지보수(SM) 계약서

계약명	(주)아이피에스 uniERP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금액	일금 삼천육백만원정 (₩ 36,000,000, VAT 별도)
계약기간	2006. 01. 01 - 2006. 12. 31 (12 개월)
○) 행(납품) 장소	(주)아이피에스
계약보증율	계약금액의 10%
기타사항	- uniERP V 20 users 유지보수.

갑과 을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불임의 계약문서에 의하여 위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1. 일반조건 1부

2. 과업내역서 1부
3. 대금지급계획서 1부
4. 견적서 1부

2005년 7월 8일

“갑”	“을”
京畿道 平澤市 芝制洞 33 (株)아이피에스 代表理事 張 鎬 承 	회사명 :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19 대표자 : 대표이사 김 

유지보수 계약일반조건

제 1 조 【계약의 목적】

본 서비스계약(이하 '본 계약'이라고 한다)은 을이 갑을 위해 본 계약에 명시된 바와 같은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각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다.

제 2 조 【정의】

본 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유지보수 : 이미 구축되거나 개발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또는 이들이 통합된 컴퓨터 시스템에 대하여 이를 직·간접적으로 운영하는 행위를 제외하고, 그 개발된 목적에 따라 성능을 관리하고 유지시키는 제반 행위를 말한다.
2. 장비 : H/W, 기계, 구성요소, 부품, 액세서리 등
3. 소프트웨어 : 패키지 S/W, 응용 S/W, 프로그램, 기타 무형물을 총칭한다.
4. 매뉴얼 : 인간의 언어나 기계언어 형식 또는 어떠한 매체로 되어 있는가와 상관없이 패키지 및 컴퓨터 시스템의 기능과 사용법을 설명하는 문서를 가리킨다. 단, 특정한 데이터모델이나 교육 목적으로만 제공되는 자료는 매뉴얼에 해당되지 않는다.
5. 컴퓨터 시스템 :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형태의 응용 데이터 베이스 및 기타 지원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부분 일체를 의미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스템이라고만 한다.
6. 유지보수 대상 : 이미 구축되거나 개발된 장비,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또는 이들이 통합된 시스템 중 본 계약에 따라 유지보수 하기로 한 것을 말한다.
7. 유지보수 서비스 : 유지보수 대상에 대하여 과업내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 3 조 【계약의 구성】

본 계약은 계약서, 일반조건, 과업내역서, 대금지급계획서, 기타 계약서상 붙임서류로 구성된다. 각 계약서류의 조건이 상충하는 경우, 계약서상 나열된 순서로 그 효력이 우선한다.

제 4 조 【유지보수 대상】

- ① 유지보수 대상은 본 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과업내역서에 정한 것으로 한다.
- ② 갑과 을은 임의로 유지보수 대상을 증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반드시 상호 서면 요청 및 승인에 의하여 증감한다.

제 5 조 【을의 유지보수 제공 의무】

- ① 을은 유지보수 대상이 본래의 목적에 따라 작동 또는 운영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② 을은 유지보수 대상중 장비에 대하여는 원제조자가 발행한 제품명세 및 보증조건의 범위내에서 해당 매뉴얼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③ 을은 유지보수 대상중 소프트웨어에 대하여는 원저작권자 또는 원공급자가 부여한 라이센스 조건

및 보증조건의 범위내에서 해당 매뉴얼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한다.

- ④ 을은 유지보수 대상중 시스템에 대하여는 본 계약 체결 시점에 작동 또는 운영되는 상태가 지속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기타 세부적인 유지보수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는 과업내역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 ⑥ 을은 과업내역서에 정한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보수 현황에 대해 갑에게 통지한다.

제 6 조 【인력의 운용】

- ① 과업내역서에 정한 경우에 한해, 을은 유지보수를 위하여 을의 인력을 갑이 요구하는 장소에 상주 시킬 수 있다.
- ② ①항에 의해 상주하는 인력은 제5조의 제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갑은 유지보수 수행인력의 원만한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용역수행에 필요한 근무장소, 자산성 집기부품, 부대시설(통신, 전기 등)을 제공하며 이에 따른 제비용은 갑의 부담으로 한다.
- ④ 을은 용역수행인력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장기휴가, 병가, 을의 자사규정에 따른 교육, 신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 등 유지보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타 을의 자체 사정 발생 시 3주전 사전 통보에 의하여 유지보수 수행인력을 교체할 수 있다.

제 7 조 【대금지급】

- ① 갑은 을에게 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대금을 대금지급계획서에 따라 지급한다.
- ② 갑이 대금지급계획서에 명시된 기한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기한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에 대해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을의 주거래은행의 일반자금대출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한다.

제 8 조 【계약의 변경】

- ① 각 당사자는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서비스의 추가, 서비스 범위 변경, 기타 본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변경요청을 받은 상대방은 합리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위 요청을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청하는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가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서비스의 범위 기타 변경내용의 기술
 2. 추가 또는 변경에 따른 검수, 인수조건 기타 계약조건에 미치는 영향
- ③ 계약내용 변경시, 변경내용에 따라 계약대금 또는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④ 모든 계약변경은 양 당사자가 서면승인 해야 한다. 서면 변경합의가 없는 채, 을이 갑이 요구한 추가 또는 변경 서비스를 수행한 경우 을은 변경요청 전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한 추가 또는 변경 서비스 수행 대가를 지급 받는다.

제 9 조 【기밀보호】

- ① 갑과 을은 본 계약기간중 및 본 계약의 종료나 해지 이후 2년간 본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영업비밀 또는 고객관련정보를 상대방의 서면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본 계약의 이행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본 계약에 따라 일방이 타방에 기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이는 현재 또는 장래에 보유하거나 소유하는 상표, 저작 또는 특허에 따른 여하한 권리 또는 사용권을 타방에게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제 10 조 【갑의 협력의무】

- ① 갑은 본 계약상 을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유지보수 대상에 대한 History, 원제조자 또는 원공급자로부터 제공받은 보증내용, 데이터, 정보, 전산환경 기타 을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 및 제반 환경을 갑의 부담하에 제공한다.
- ② 본 계약상 을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 갑의 사무소 등에서 을이 작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갑은 당해 작업실시장소(당해 작업실시장소에 있어서 필요한 기기, 설비 등 작업환경을 포함한다)를 무상으로 을에게 제공한다.
- ③ 갑이 본조에 의하여 제공한 장소, 장비, 각종 자료 등의 잘못으로 인하여 본건 서비스 제공이 지체되거나 하자가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을은 그 책임을 면한다.
- ④ 갑은 임의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를 유발한 경우 을에 대한 유지보수 의무를 주장할 수 없다.
 1. 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원제조업체, 원저작권자, 공급업체가 제한하거나 부여한 조건을 위배하여 유지보수 대상을 개조, 수정, 변경, 변형하는 경우
 2. 을의 동의 없이 타 장비 또는 타 소프트웨어 또는 타 시스템과 유지보수 대상을 연계, 연동, 결합시킴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기능저하가 발생한 경우
 3. 을의 동의 없이 유지보수 대상을 이동시키거나 전산환경을 변경하거나 함으로써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 11 조 【검수】

- ① 을은 본 계약상 과업내역서에 정한 서비스를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갑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 과업내역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갑은 제①항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3일 이내에 을의 입회하에 검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객관적으로 명백히 불가피한 사정으로 갑이 검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의 합의로 검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③ 갑이 전항의 검수 결과 계약이행내용이 검수조건에 위반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갑이 제②항의 기간내에 서면으로 검수결과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이 만료한 날에 검수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 12 조 【손해배상】

- 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을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갑이 손해를 입은 경우, 을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② 을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데이터의 분실 또는 손상, 영업기회 및 기대했던 이익의 상실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 한다.
- ③ 을이 본 계약과 관련하여 배상할 일체의 손해배상액 총액은 계약금액을 초과하지 아니 한다.

제 13 조 【불가항력】

-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 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파업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로 인하여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이는 대한민국 국내에

서 발생하여 본 계약상 업무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한다.

- ② 위 ①항의 경우 양 당사자는 인도를 위하여 객관적으로 준비했거나, 이미 인도되었거나, 기성된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미이행부분에 대하여 상호 책임을 주장하지 아니하며, 즉시 손해의 축소 등을 위한 조치에 착수하는 외에 계약기간 연장 등 필요한 합의를 하여야 한다.

제 14 조 【해지】

- ①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일방의 부도, 은행거래 정지, 파산, 화의, 워크아웃 또는 회사정리 절차 개시신청을 한 경우
 2. 일방이 자산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거처분, 소송, 경매 등의 강제집행을 당하여 사실상 본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② 각 당사자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시정요구기간내에 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계약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명백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3. 일방의 귀책사유로 사업수행 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5/100를 초과한 경우
- ③ 계약이 해지된 경우, 을은 해지시까지 완성된 부분을 갑에게 제공하고, 갑은 을이 제공한 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제 15 조 【분쟁해결】

- ① 본 계약의 수행 중 양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협의하여 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은 즉시 본 계약의 이행을 중단할 수 있으며 이후 제①항의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해결한다.
- ③ 제②항에 의한 소송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
- ④ 본 계약 및 과업내역서는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양 당사자간의 완전하고도 유일한 합의를 이루며, 이전의 모든 서면 또는 구두 합의를 대신한다.

II. 과업내역서

1. 과업의 목표 및 범위

(주)아이피에스에 구축된 전사적자원관리(ERP) 시스템의 유지관리 및 지속적인 교육관리를 통해 정보시스템 활용을 극대화 하여 (주)아이피에스의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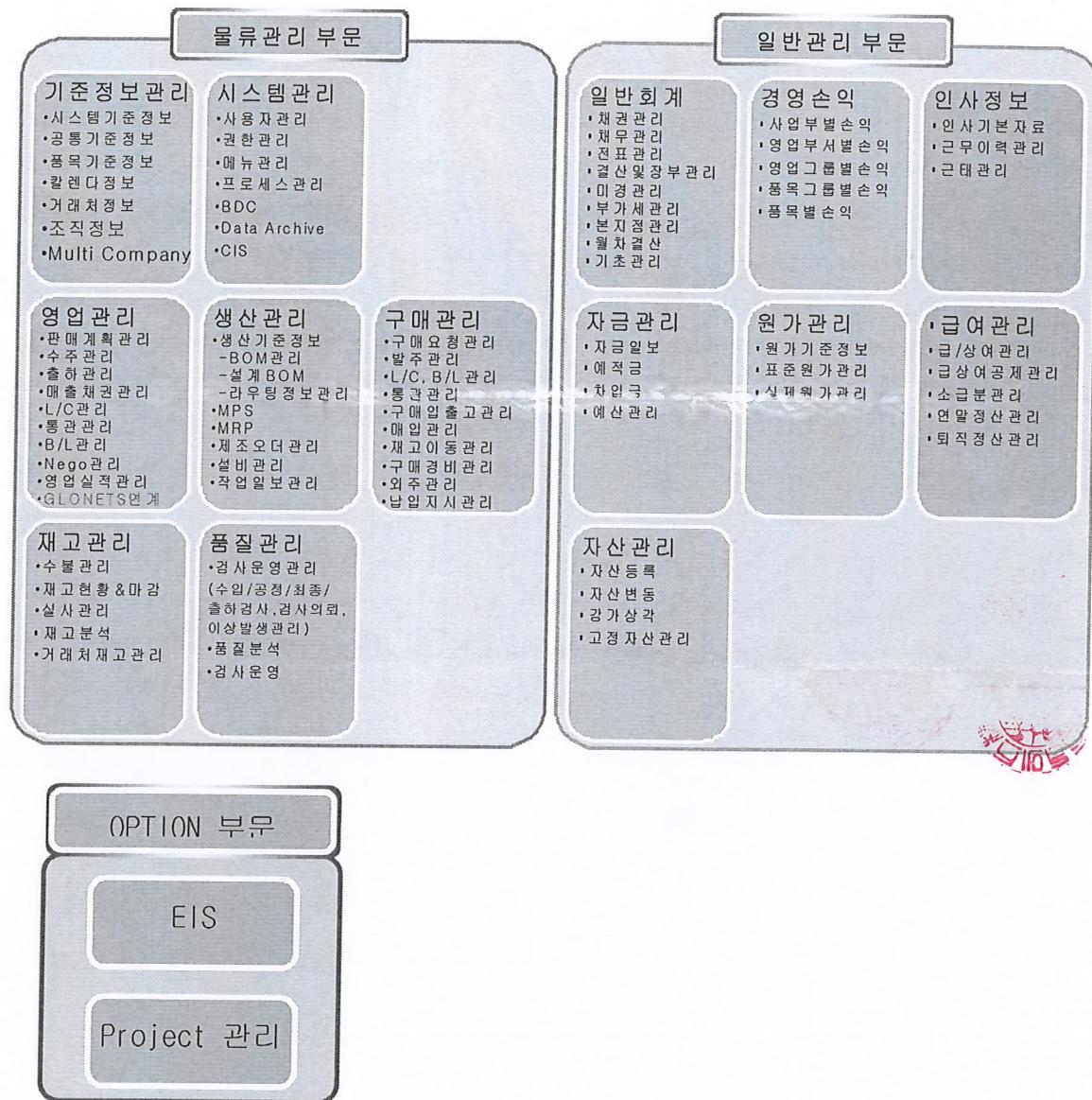
구분	목표 및 범위
ERP 시스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RP 시스템 운영<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 관리 (수출 관리 포함)- 생산 관리- 구매 관리 (수입 관리 포함)- 재고 관리- 품질 관리- 회계 관리- 인사/급여 관리- 원가 관리- 경영순익 관리- 기준 정보 관리(Basis Architect)◎ 경영자정보(EIS) 관리 운영◎ Project 관리 운영◎ 삼성전자 SCM (GLONETS)과 연계시스템 운영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서비스

2. 과업의 기간 및 일정

- 2006. 01. 01 ~ 2006. 12. 31 (12개월)

3. 과업의 범위 및 내용

가. SM서비스 범위



나. SM서비스 내용

- 1) uniERP 패키지와 커스터마이징한 부분에 대한 BUG PATCH 및 운용상의 TROUBLE SHOOTING 해결
- 2) uniERP 패키지의 업그레이드 CD-ROM 제공, INSTALL 및 DATA CONVERSION 지원
- 3) uniERP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매뉴얼등 자료와 사용자 추가 교육
- 4) uniERP 세미나, 행사, 컨퍼런스, 교육관련 정보 제공
- 5) 정기방문 하여 시스템 점검 및 불편사항 해소
- 6) 전사적자원관리(ERP)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지원
- 7) 업무운영지원 (월차결산작업 등)



III. 대금지급계획서

1. 계약금액 : 총 삼천육백만원정 (₩ 36,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2. 계약금액의 상세내용은 '붙임서류 4. 견적서'를 참조한다.
3. 계약금액에 대한 "갑"의 지급조건은 다음과 같다.
.”을”은 매월 20일 ₩3,000,000원씩 청구하고 “갑”은 익월 10일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사적자원관리(ERP) SM서비스 견적서

NO
견적일 2005년 7월 7일
(주)아이피에스 귀하

상 호	삼성에스디에스주식회사
사업자등록번호	110-81-28774
사업장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07-19
대 표 자 성 명	김 인
전 화 번 호	031-200-8800

아래와 같이 견적합니다.

※ 견적 유효 기간은 견적일로부터 30일입니다.

NO	품 명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VAT	거래 금액
1	SM서비스료	월	12	3,000,000	36,000,000		
2	-이하여백-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합계					36,000,000	-	-

* SM 서비스 견적 상세내역

항 목	산출내역			(단위: 원)
	PKG도입금액	요율(%)	금액(원)	
프로그램 패키지(1)-ERP SM(방문) 서비스 유류비 통행료 합계 특별 출인 공급가	74,000,000 8,500,000 60KM (수원<->평택)	15 40	925,000 /월 3,400,000 /월 82,200 40,000 4,447,200 -1,447,200 3,000,000	/월 /월
				uniERP 소비자 가격 * 15% / 12개 중급 기술자 단가 / 20 * 방문 횟수(8회) 60K * 8회 / 8K * 리터당 단가(1370)

SM서비스 란?

- 정보시스템의 구축에서 운영까지 책임을 갖고 운영하는 방식(일명 도급방식)

SM서비스 별위

- 1) uniERP 패키지와 캐스터마이징한 부분에 대한 BUG PATCH 및 운용상의 TROUBLE
 - 2) uniERP 패키지의 업그레이드 CD-ROM 제공, INSTALL 및 DATA CONVERSION 지원
 - 3) uniERP 업그레이드와 관련된 매뉴얼 등 자료와 사용자 교육 제공
 - 4) uniERP 세미나, 행사, 컨퍼런스, 교육관련 정보 제공
 - 5) 정기방문하여 시스템 점검, 추가 요청 교육 및 컨설팅 등 불편사항 해소(주 2회 이상)
 - 6) 전사적 지원 관리(ERP)이 원활히 운영되도록 최선의 지원
 - 7) 업무운영 지원 (급여, 월결산작업 등)
- 단, uniERP 이외의 신규 프로그램 작성 및 모듈 관련 컨설팅은 제외(연속적으로 10 M/D 이상)